

잠깐!

동물등록

하셨나요?

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.
(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미처 못하셨다면 **자진신고기간 (2019.7.1.~8.31.)**을 이용하세요.
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**과태료가 면제됩니다.**

멍!



멍!



등록대상

동물등록은 언제?

강아지가 **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** 등록하셔야 합니다.
※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
※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.

변경신고란?

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(**10일 이내**)
소유자 정보(주소, 전화번호)가 변경되었을 때,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,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,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(**30일 이내**)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등록방법

동물등록은 어떻게?

시·군·구청 및 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보호센터 등)에서 접수하세요.

변경신고는 어떻게?

소유자변경은

시·군·구청에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[동물등록 변경신고서]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

소유자정보 변경사항, 동물 유실·사망 등은

시·군·구청에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[동물등록 변경신고서]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APMS(동물보호관리시스템)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